

● 제286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19. 4. 22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이정인 의원 발의 】

의안번호 559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가. 제안자 : 이정인 의원 발의(찬성자 22명)

나. 제안일 : 2019. 3. 29.

다. 회부일 : 2019. 4. 3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(2017.12.19.)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되어, 관련 사항 반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- 조례의 제명을 바꿈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적극적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항 내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(조례 제명, 제1조, 제2조제4호, 제3조, 제3장, 제6조제1항, 제10조, 안 제13조, 제17조제5항, 제6항, 제18조제1항)
- 중증장애인의 정의 조항(안 제2조제1호)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임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
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)
- 다. 기타사항 : 신·구조문 대비표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정창훈)

1 개정안의 취지

- 개정안은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(2017.12.19.)¹⁾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 등 자립생활 지원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임.

2 주요사항 검토

가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-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임. 자립생활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라 “중증장애인”에서 “장애인”으로 용어 변경 (조례 제명, 제1조, 제2조제4호, 제3조, 제3장, 제6조제1항, 제10조, 안 제13조, 제17조제5항, 제6항, 제18조제1항).
- 또한, 조문 전체에서 중증장애인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중증장애인 정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임(제2조제1호).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	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중증장애인</u>	제1조(목적) ----- <u>장애인</u> -----

1)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(참고 8P)

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
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함으
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
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
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
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
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중증장애인"이란 신체적·정
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
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
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 「장애
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
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
하는 자를 말한다.

2.·3. (생략)

4. "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"
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4조에
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
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
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시
에 등록된 비영리법인·단체가
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

5. ~ 7. (생략)

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장
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중증장애인

-----장애인-----

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2.·3. (현행과 같음)

4. "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"--

----- 장애인-----

5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시장의 책무) -----
----- 장애인-----

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,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3장 중증장애일자립생활지원센터

제6조(센터의 지원)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행하는 중증장애일자립생활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에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10조(센터의 사업) 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.

제13조(추가 제공) 시장은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7조(주거생활의 지원) ① ~ ④ (생략)

⑤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-----.

제3장 장애일자립생활지원센터

제6조(센터의 지원) ① --- 장애인

장애일자립생활지원센터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센터의 사업) ---- 장애인-----

-.

제13조(추가 제공) -----

----- 장애인-----

-----.

제17조(주거생활의 지원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 장애인-----

-----.

<p>⑥ 시장은 <u>중증장애인의</u>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전문적으로 돕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⑥ ----- 장애인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8조(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) ① 시장은 ----- ----- ----- ----- <u>중증장애인</u> ----- ----- ② (생략)</p>	<p>제18조(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) ① 시장은 ----- ----- ----- <u>장애인</u>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

나. 조례 개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 : 원안동의

- 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(장애인복지정책과, 장애인자립지원과)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 용어변경으로 등급제 폐지에 따른 사업 및 영향 분석 결과²⁾ 쟁점사항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3 종합 검토 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(장애인복지법, '17.12.19개정)의 개정사항³⁾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, 용어를 개정(중증장애인→장애인)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을 방지함으로써 체계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인 바,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2)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시 재정영향 분석 및 대책 보고, 서울시(참고2, P8~9)
3)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(참고1 7P)

□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배경

- 획일적인 장애등급을 대신하여, 장애인 복지서비스별 특성 및 제공 목적에 따른 서비스제공기준 마련
- 장애등록 후 각 서비스별로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했던 방식에서 장애인이 서비스를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구축

☞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

□ 장애인복지법 개정(2017.12.1.) 주요내용 (2019.7월 시행)

- (장애등급제 폐지) ‘장애 등급’이라는 용어를 ‘장애 정도’로 개정, **법률상 장애등급제를 폐지**(법 제32조)
 - * 중증장애인(1~3급) 기준 등은 향후 하위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(~‘18상)
- (서비스 지원 종합조사)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 욕구·환경 등을 조사해 수급자를 결정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* 실시 (법 제32조의4)
 - * (대상사업) 활동지원, 보조기기, 거주시설, 기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
- (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) 사각지대 장애인 방문상담,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통한 사례관리 실시(법 제32조의6, 제32조의7)

□ **등급제 폐지 개요**

○ 장애인복지법 개정('17.12.1 개정 / 시행 '19.7월)

- 용어 정리 : '장애등급(현행)' → '장애정도'(개정)

-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 : (현행) 장애등급별 차등 지원

→ (개정) 장애인 욕구환경 등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

※ (예시)서비스 제공기준 개편 방향

현행 기준	향후 개편	대상자 변동
1~6급 장애인	장애인	없음
1~3급 / 4~6급	중증장애인 / 경증장애인	없음
1~2급 및 3급 일부	검토 필요	변동 가능
1~4급	검토 필요	변동 가능
1~2급 / 3~4급 / 5~6급	검토 필요	변동 가능

□ **등급제 폐지로 달라지는 사업 및 市 재정부담(추계)**

○ **국시비 매칭사업**은 정부에서 총 80개 사업을 기존 등급별 차등지원 방식에서 4가지 개편방향을 정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'18년 하반기까지 마련 예정

① 종합 판정체계 적용(4개 사업), ② 중/경증 구분하여 기준 적용(58개사업)

③ 현행수준 기준 적용(9개사업), ④ 추가 검토 필요사업(9개사업)

○ 위 4가지 방안에서 향후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

-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지원기준만 現 1~3급 중증장애인에서 종합판정 결과에 따라 4급정도까지 확대되면 시비 약 7억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측되며,

-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은 기존부터 중증(1~3급)/ 경증(4~6급)으로 나누어 시행하여 왔으므로 등급폐지 되어도 상황 변동은 없음.

※ 장애연금의 경우도 지원기준이 기존 1~2급, 3급(중복장애)이었다가 향후 개편되더라도 현행 내부기준(장애등급판정)을 준용할 계획이므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

○ 市 자체사업(시비 100%) 총 2개사업으로 현행 기준에서 큰 변동 없을 것으로 판단됨

-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은 기존부터 출산한 전체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영향이 없으며,

-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(복지콜) 및 바우처택시는 現行기준 시각장애 1~3급, 신장장애1~2급으로 향후 중증장애인으로 개편되어도 시각장애는 변동없고, 신장장애는 3급이 추가되나 인원이 극소수(11명)이므로 거의 영향이 없음.